

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문화시설, 도로), 용도지역 변경
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139호(1994.05.06.)호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, 마포구 고시 제 1994-33호(1994.10.07.)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(면적정정), 마포구 고시 제 2001-48호(2001.05.19.)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116 호(2004.11.10.)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방수설비) 변경 결정, 마포구 고시 제2013-2호 (2013.01.03.)로 도시계획시설(방수설비)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373호(2020.09.10.)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방수설비)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중복결정된 도시계획시설 (전기공급설비, 방수설비, 문화시설) 부지 일대에 대하여,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, 문화시설, 도로) 및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(경미한변경)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서울특별시

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용도지역) 결정 조서

1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1	380	20	집산도로	1,450	마포구 신수동 신수 초등학교 앞	합정동 359-1	일반 도로	서고 제1997-62호 (1997.3.13.)	-
변경	중로	1	380	20	집산도로	1,450	마포구 신수동 신수 초등학교 앞	합정동 359-1	일반 도로	서고 제1997-62호 (1997.3.13.)	도로 선형 일부 변경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3	361	15	집산도로	463	합정동 376-24	합정동 359-1	일반 도로	서고 제1997-62호 (1997.3.13.)	-
변경	중로	3	361	15	집산도로	463	합정동 376-24	합정동 359-1	일반 도로	서고 제1997-62호 (1997.3.13.)	도로 선형 일부 변경

-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결정(변경)사유
중로 1-380	중로 1-380	· 도로 선형 일부 변경	· 전기공급설비 변경(직원합숙소 설치 및 시설 경계부 조정)에 따른 도로 경미한 변경
중로 3-361	중로 3-361	· 도로 선형 일부 변경	· 전기공급설비 변경(직원합숙소 설치 및 시설 경계부 조정)에 따른 도로 경미한 변경

■ 전기공급설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전기공급 설비	-	마포구 합정동 55-1번지 일대	114,660	-	114,660	서고 제1994-139호 (1994.5.6.)	중복결정 문화시설 : 81,650㎡
변경	①	전기공급 설비	-	마포구 합정동 55-1번지 일대	114,660	증) 3,034	117,694	서고 제1994-139호 (1994.5.6.)	중복결정 문화시설 : 82,583.38㎡

- 전기공급설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결정(변경)사유
①	전기공급설비	· 전기공급설비 경미한 변경 - 기정 : 114,660.0㎡ - 변경 : 117,694.0㎡ (증 3,034.0㎡)	·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 : 서울복합화력발전소) 내 부대시설(직원합숙소) 재설치 및 시설 경계 조정

■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문화시설	문화시설	마포구 당인동 1번지 일대	81,650	-	81,650.0	서고 제2020-373호 (2020.9.10)	중복결정 방수설비 : 1,150.3㎡, 전기공급설비 : 81,650㎡
변경	①	문화시설	문화시설	마포구 당인동 1번지 일대	81,650	증) 933.38	82,583.38	서고 제2020-373호 (2020.9.10)	중복결정 방수설비 : 1,103.2㎡, 전기공급설비 : 82,583.38㎡

- 문화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결정(변경)사유
①	문화시설	· 문화시설 경미한 변경 - 기정 : 81,650.0㎡ - 변경 : 82,583.38㎡ (증 933.38㎡)	· 기정 문화시설 결정 범위 내 전기공급설비의 부대 시설(직원합숙소) 구간 제척 · 효율적 토지이용·관리를 위한 토정보변 문화시설 경계 확장 조정

- 문화시설 건축물의 범위(변경없음)

건폐율	용적률	높이	비고
10% 이하	18% 이하	6층 이하	자연녹지지역

■ 방수설비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①	방수설비	-	마포구 합정동 55-1번지 일대	4,645.1	-	4,645.1	서고 제1991-302호 (1991.10.23.)	중복결정 (문화시설)

- 방수설비 입체적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방수 설비	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55-1번지 일원	[하수박스 3.0×2.5] 길이 : 339.235m, 폭 4.48m 높이 : EL.3.44m~14.0m [하수박스 1.5×1.5] 길이 : 44.865m, 폭 : 2.82m 높이 : EL.4.16m~13.7m [기준박스 2.0×2.0] 길이 : 18.0m, 폭 : 3.6m 높이 : EL.4.96m~9.15m	1,711.0	-	1,711.0	· 구분지상권 설정 - 높이 : 평균해수면 기준 - 폭 : 도시계획시설 기준

2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117,694.0	-	117,694.0	100.0	
주거지역	소계	2,876.0	감) 2,876.0	-	-	
	제1종일반주거지역	9.0	감) 9.0	-	-	
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2,237.3	감) 2,237.3	-	-	
	제2종일반주거지역	629.7	감) 629.7	-	-	
녹지지역	소계	114,818.0	증) 2,876.0	117,694.0	100.0	
	자연녹지지역	114,818.0	증) 2,876.0	117,694.0	100.0	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
-	합정동 85-11번지	제1종일반주거 지역	자연녹지지역	9.0	· 서울북합화력발전소 내 직원합숙소 이전 재설치 및 전기공급설비 시설 경계 현행 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-	합정동 50-5번지 일대	제2종일반주거 지역(7층)	자연녹지지역	2,237.3	
-	합정동 51-2번지 일대	제2종일반주거 지역	자연녹지지역	629.7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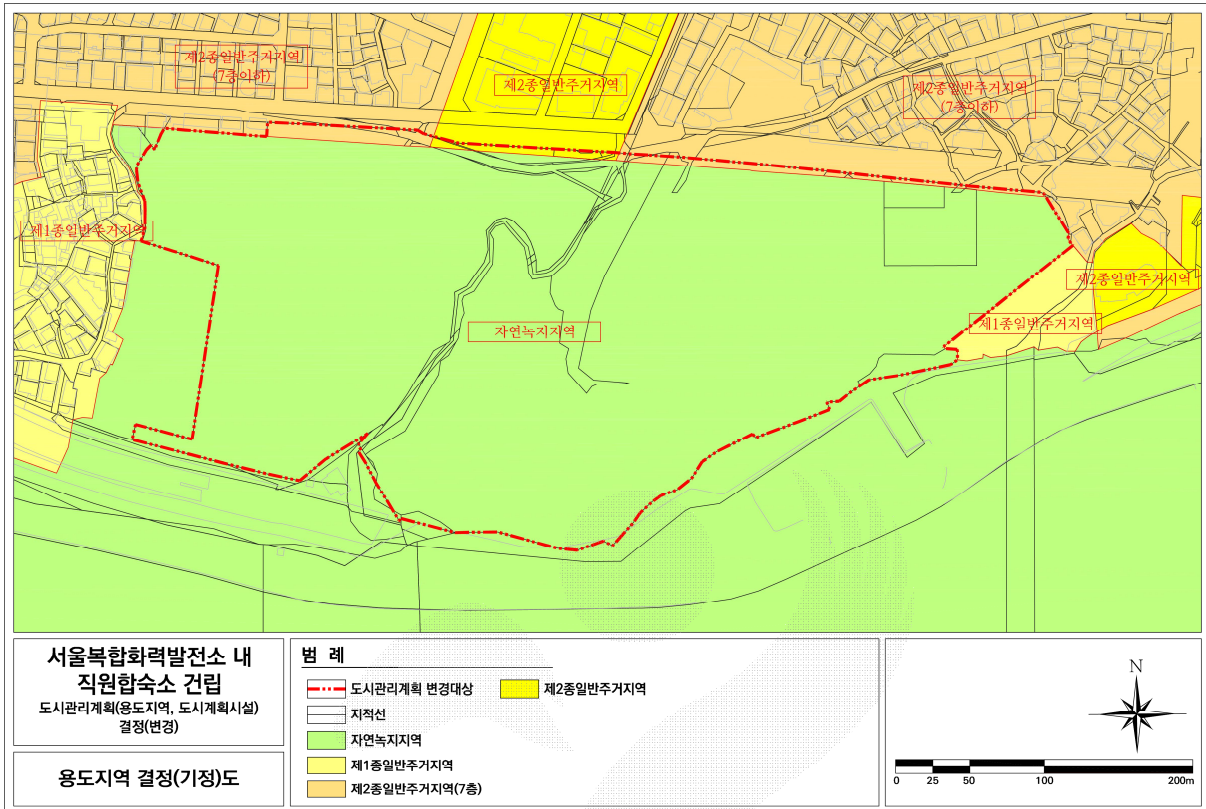
나. 지형도면의 작성 : 서울시 시설계획과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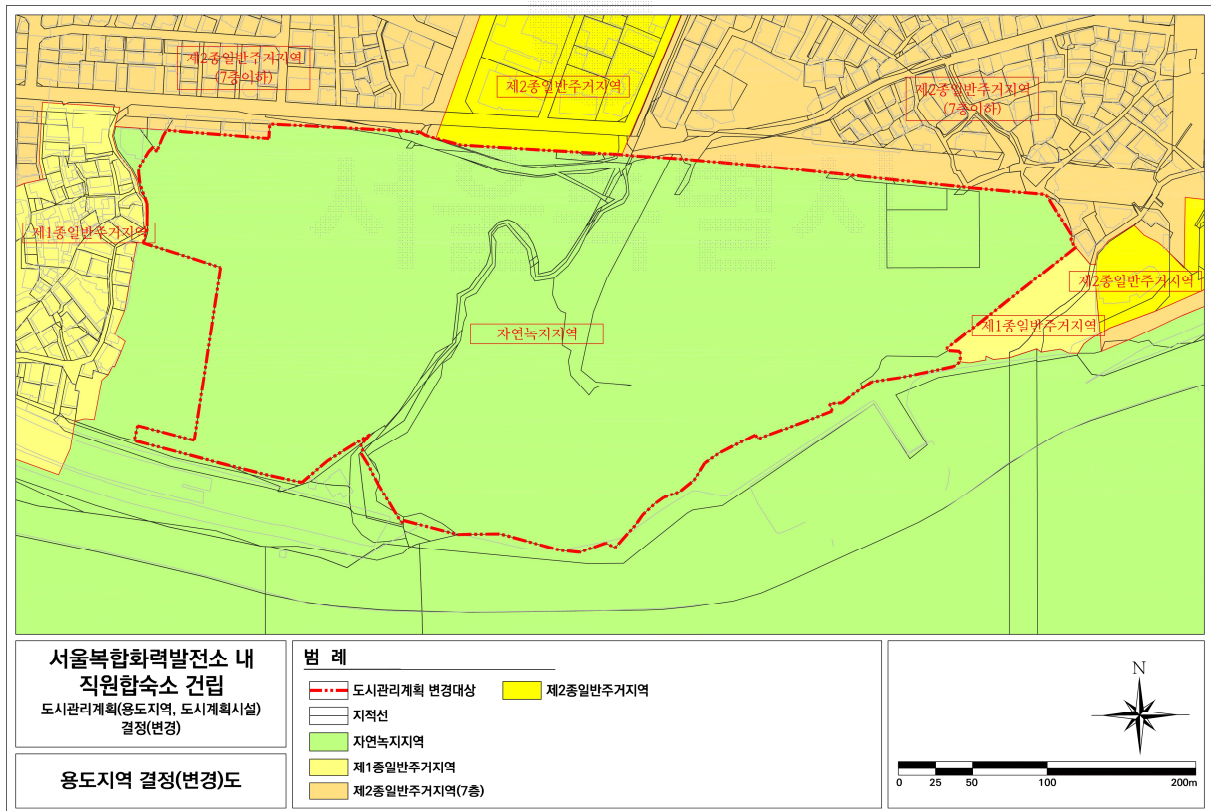
다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(☎ 02-2133-8407) 및 마포구 도시계획과
(☎ 02-3153-9353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
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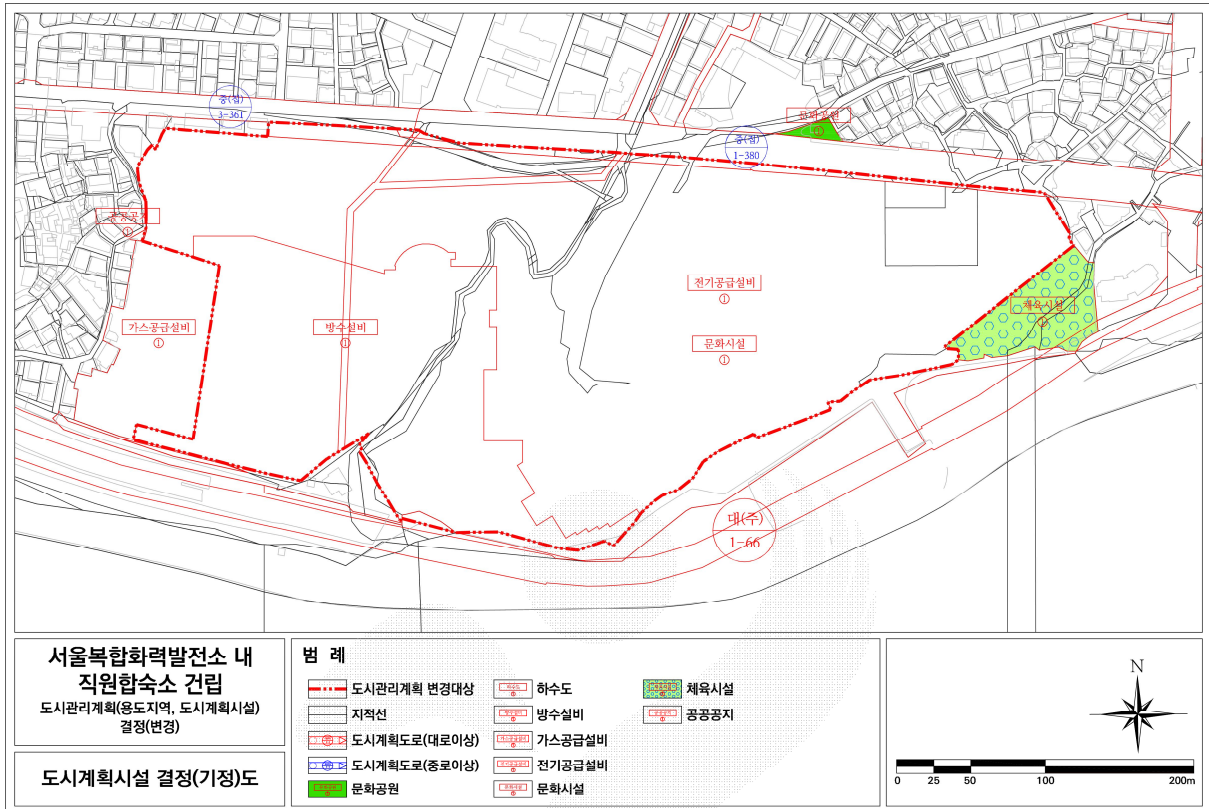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)



■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)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